

2026년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4차)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0.33억원 정도 (국비 0.30억 원, 지방비 0.03억 원)
 - 공급가액 기준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은 기업 현금 부담
 - ※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1,100만원 = 정부지원금(1,000만원)+기업부담금(100만원)
 - ※ VAT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단가	지원기간
POST-BI	컨설팅, PRE-R&D/POST-R&D	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100만원	협약일로부터 ~ 2025.11.30.
초기기업	컨설팅, PRE-R&D/POST-R&D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제한(지역특화프로젝트 지원금 포함)되며 지원금은 지원프로그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컨설팅 및 하위프로그램 복수 지원은 가능하나 PRE-R&D와 POST-R&D 간 중복 신청은 불가 (초광역선도기업 제외)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며,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다만,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울산 내 주사업장(공장·지사·연구소) 신청 가능

** 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이나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²⁾)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청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업) → 지원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구 분	공고·신청접수
일 정	'26. 8. 24.(월), 18:00까지
	기한 내 최종 제출 완료 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제출·접수처	http://www.smttech.go.kr/region/rms
비고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제출서류) 첨부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상세 제출 서류 내용은 [붙임4] 참고

- (지원프로그램) 컨설팅 · PRE-R&D · POST-R&D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컨 설팅	경 영 분 야	① BM 전략 수립	• 주력산업 맞춤 BM 전략, 수요기업·적용산업 분석, 사업화 단계별 로드맵, 시제품·실증·전시 연계 등	400만원
		② 기업 생산성 향상	• 기업별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기업진단 및 컨설팅 정보 제공	400만원
		③ EGS 경영	• 기업 현황 진단 기반 ESG 전략 수립, 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공시·평가 대응 등	400만원
	기 술 분 야	④ R&D과제기획	• 과제 후보 발굴 및 방향 설정, 기술 기획 및 R&D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기획 등	400만원
		⑤ 기술지도	• 애로 기술 또는 보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자문	1,000만원
		⑥ 공정개선	• 공정 진단 기반 재설계·표준화·생산 정보 관리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품질 개선 지원	2,000만원
	시 장 분 야	⑦ 시장조사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지원	1,000만원
		⑧ 수출 전략 수립	• 글로벌 시장성 및 해외 적용 산업·수요기업 분석, 글로벌 BM 및 기술이전·라이선스 수출 전략 수립	1,500만원
PRE - R&D	① 기술이전		• 제품·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1,000만원
	② 시제품제작		• 설계,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prototype 제작 지원	5,000만원
	③ 장비지원		• 연구개발,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500만원
	④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상표 등의 확보를 위한 지재산 출원 지원	2,000만원
	⑤ 인증지원		•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을 위한 제품·기술 인증지원	1,000만원
POST - R&D	① 제품 고급화		• 개발 제품·기술의 사업화 및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5,000만원
	② 디자인		•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의 디자인 지원	1,000만원
	③ 마케팅		• 제품 홍보, 수출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지원	1,000만원
	④ 제품운송		• 수출 희망품 및 바이어 요구 제품 등의 해외수출조건부 지원	1,000만원
	⑤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통·번역비 지원	500만원

※ 지원대상별 지원 상세 내용은 [붙임1],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붙임2] 참조

※ 선정기업 대상 공급기업 추천. 단,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별도 공급기업 제시 가능.(공급기업 사전 매칭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신청시 미작성, 붙임 3. 참조)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내용 타당성 (35)	○ 지원 내용, 범위, 수행 일정의 구체성	25
	○ 지원 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10

-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 점수 기업 간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지역 내 소재*하며,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연번	신청제외 대상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 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성장전략 인터뷰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실태 결과물점검
주관기관	사업신청	현장 인터뷰 (전담PM)	평가위원단 (발표평가)	프로그램 지원/수행	점담PM 활동(2회)
7.24.	7.24 ~ 8.24	신청일~8.26.	8.27.	협약일~11. 30.	일정 협의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공급기업 협약체결

※ 추진 상황에 따라 방법 및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	메일
이다영 연구원	052-219-8614	ekdud899@utp.or.kr
박준형 연구원	052-219-8617	kpe3839@utp.or.kr

○ RMS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공급기업 등록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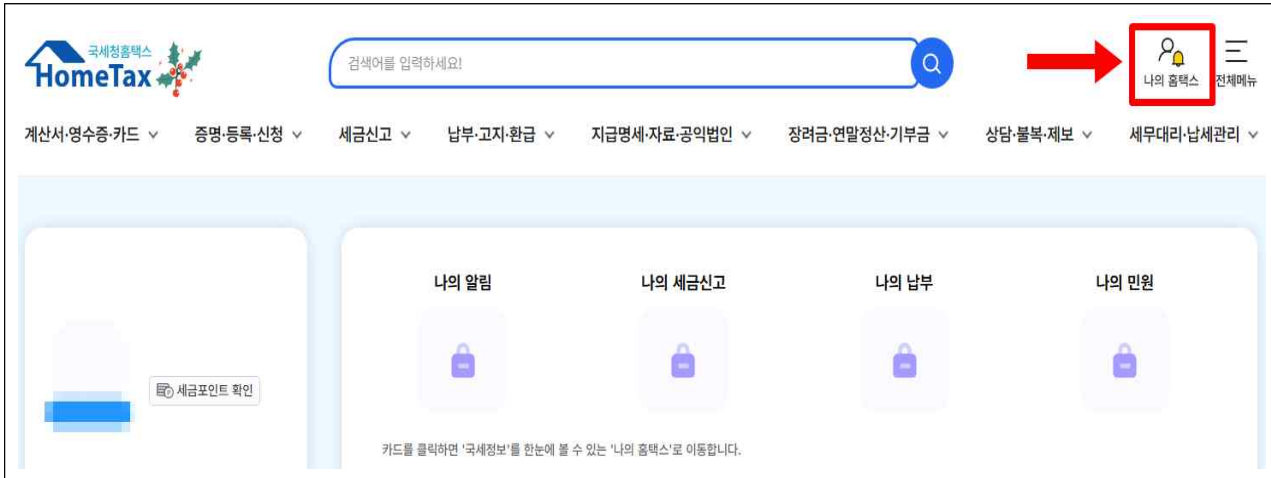
참고 1

분야별 KSIC 코드 목록(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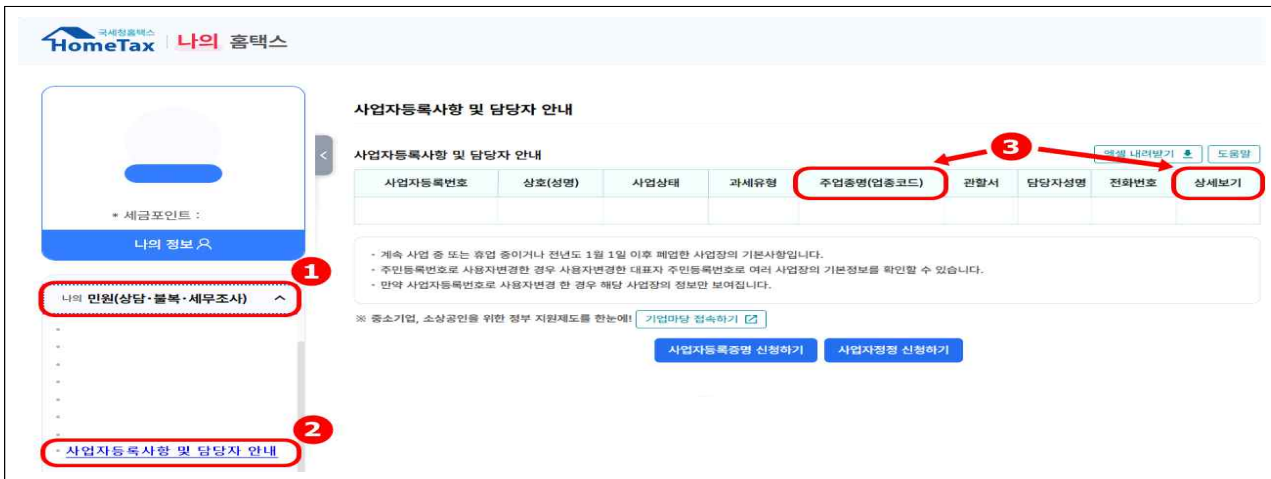
분야	코드번호	산업분류명	비고
모빌리티 (자동차)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KSIC 코드(11차 기준) 중 세세분류(5자리) 또는 세분류(앞 4자리) 일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함. 단, 주력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모빌리티 (선박)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제조 (소재부품)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확인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hoetax.go.kr) 로그인 ⇒ 나의 홈텍스



② 민원(상담+불복+세무조사)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코드 확인



③ 상세보기 ⇒ 부업종코드 ⇒ 전체화면 인쇄하여 제출

※ 제출서류 예시(주업종코드/부업종코드 내역 필수)



④ 첨부파일 별첨 1.을 참고하여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

붙임 1**지원대상별 지원 상세내역****울산-1****울산 지역 POST-BI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울산 지역 POST-BI기업의 공공 인프라 활용을 통한 기술 자생력 강화 및 독자적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100만원 이내(VAT 제외), 1개사 내외
 - 총 사업비(공급가액) 대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은 기업 현금 부담
- (신청자격) 공통 및 필수지표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구분	주요 내용
공통 지표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²⁾)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업종) 울산 지역 주력산업(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 기업 - (종사자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신청일 기준)
필수 지표	- 울산 지역 내 주요 공공·혁신기관 입주* 중인 기업 * (정부·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각 구·군청, (혁신기관)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진흥지원기관) 경제일자리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내 보육센터) 울산대학교·UNIST 창업보육센터 등 - (POST-BI)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

□ 상세 프로그램 내용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금
컨설팅, PRE-R&D 또는 POST-R&D	※ [붙임2] 참조	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100만원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울산 지역 초기기업의 차별화된 아이템 브랜딩 기반 시장 안착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VAT 제외), 2개사 내외
 - 총 사업비(공급가액) 대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은 기업 현금 부담
- (신청자격) 공통 및 필수지표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구분	주요 내용			
공통 지표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 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²⁾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업종) 울산 지역 주력산업(모빌리티(자동차), 모빌리티(선박), 제조(소재·부품)) 기업 - (종사자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신청일 기준)			
	- (초기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면서, 혁신성 지표 점수 합계 30점 미만			
필수 지표	지 표	세부내용	배 점	비 고
	신청일 기준 연구조직 보유 여부	전담 부서	20점	택 1, 신청일 기준
		연구소	30점	
	2025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	0% 초과 ~ 0.5% 미만	10점	
		0.5%이상 ~ 1% 미만	20점	
		1% 이상	30점	
	최근 3개년('23년 ~ '25년) 평균 특허 출원·등록 (건)	0건 초과 ~ 1건 미만	5점	
		1건 이상 ~ 2건 미만	10점	
		2건 이상 ~ 4건 미만	15점	
		4건 이상	20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금
컨설팅, PRE-R&D 또는 POST-R&D	※ [붙임2] 참조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붙임 2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

구 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컨설팅	경영분야	① BM 전략 수립	- 주력산업 맞춤 BM 전략, 수요기업·적용산업 분석, 사업화 단계별 로드맵, 시제품·실증·전시 연계 등 (결과물) BM 전략수립 보고서 1식(30페이지 이상)	400만원
		② 기업 생산성 향상	- 기업별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기업진단 및 컨설팅 정보 제공 (결과물) 기업 생산성 향상 보고서 1식(30페이지 이상)	400만원
		③ EGS 경영	- 기업 현황 진단 기반 ESG 전략 수립, 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공시·평가 대응 등 (결과물) ESG 경영 보고서 1식(30페이지 이상)	400만원
	기술분야	④ R&D과제기획	- 과제 후보 발굴 및 방향 설정, 기술 기획 및 R&D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기획 등 (결과물) R&D과제기획 보고서 1식(30페이지 이상)	400만원
		⑤ 기술지도	- 애로 기술 또는 보유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자문 (결과물) 기술 진단 및 자문 결과보고서 1식 등(50페이지 이상)	1,000만원
		⑥ 공정개선	- 공정 진단 기반 재설계·표준화·생산 정보 관리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품질 개선 지원 - 단순 설비 도입·교체, 자산성 물품 구입 등은 미지원 (결과물) 공정 진단·개선 보고서 및 표준 작업서 1식 등(50페이지 이상)	2,000만원
	시장분야	⑦ 시장조사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지원 (결과물) 신규 시장 발굴 및 확대 등 보고서 1식(50페이지 이상)	1,000만원
		⑧ 수출 전략 수립	- 글로벌 시장성 및 해외 적용 산업·수요기업 분석, 글로벌 BM 및 기술이전·라이선스 수출 전략 수립 (결과물) 수출전략수립 보고서 1식 등(50페이지 이상)	1,500만원
PRE - R&D	① 기술이전		- 제품·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산업기술(기업)의 경우 기술가치평가 실시 기술만 해당 (결과물) 기술이전 계약서 및 기술성/사업성 분석 보고서 1식 등	1,000만원
	② 시제품제작		- 설계,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prototype 제작 지원 - 신규사업 아이템의 설계 및 제작 지원으로 단순 완제품 양산, 자산성 물품 구입, 양산형 금형 제작 미지원 (결과물) 시제품 1식, 설계도면 및 제작 사양서, 시험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5,000만원
	③ 장비지원		- 연구개발,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결과물) TEST RPORT 1식 등	500만원
	④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상표 등의 확보를 위한 지재권 출원 지원 - 특허출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출원비 지원으로 등록 및 관납료 미지원 (결과물) 출원서 및 명세서, 출원을 위한 도면 등 제출 서류 등	2,000만원
	⑤ 인증지원		-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을 위한 제품·기술 인증지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6종):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 제품, 녹색인증, GD - 조달가점·법정의무(9종):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결과물) 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 1식 등	1,000만원
POST - R&D	① 제품 고급화		- 개발 제품·기술의 사업화 및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신뢰성 평가·고장분석 기반 설계 개선안 반영 제작 - 고객요구서·개선요청서 등 근거자료 필수 첨부 (결과물) 개선 제품 1식, 성능 개선 비교자료(전후),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등	5,000만원
	② 디자인		-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의 디자인 지원 - 제품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BI·CI 개발 미지원 (결과물) 디자인 시안 및 최종 결과물, 브랜드 가이드라인 등	1,000만원
	③ 마케팅		- 제품 홍보, 수출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지원 (결과물) 카탈로그 및 지류 홍보물,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SNS 등	1,000만원
	④ 제품운송		- 수출 희망품 및 바이어 요구 제품 등의 해외수출조건부 지원 (결과물) 구매주문서(PO) 수출계약 증빙자료, 수출신고필증 등	1,000만원
	⑤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통·번역비 지원 (결과물) 통·번역 수행 결과 1식 및 바이어 상담 기록 등	500만원

※ 지원대상 성장단계별 지원단가 내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가능.

※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수행 내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결과물 제출 必

□ **공급기업 자격요건**

- (공급기업 정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 수요 기업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 (기본요건)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각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또는 기관(단일 사업체만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시한 공급기업 검토를 위해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必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별도 공급기업 지정 사유서 등 ※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공급기업을 별도 제시 가능(별도 공급기관(업) 검토위원회 개최 예정)	선정평가 결과 안내 시 양식 제공 예정
2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②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분)	①번 우선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협약체결 시 필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회사일 경우	협약체결 시 필요 서류
6	사용인감계	검토위원회 “통과” 후 협약체결 시 필요 서류
7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회사일 경우	

※ 상기 제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후 공급기업 추천 및 별도 안내 예정.

- (참여제한) 아래의 제외 대상은 참여 불가

제외 대상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공공정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기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 휴·폐업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기관)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기관)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 공급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붙임 4

신청기업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1	사업신청서 직인날인본	제 1호	필수
1-1	사업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계획서	제 1 ~ 3호	필수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제 4호	필수
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제 5호	필수
4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본	신청기업 제출	필수
5	(본사) 사업자등록증 -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본사 소재가 울산 지역이 아닌 경우 울산지역 소재 지사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	신청기업 제출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회사일 경우	신청기업 제출	필수
7	신청기업 산업분류코드(KSIC) ① 산업분류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상세) ※ KSIC 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캡처본 포함)	신청기업 제출 (① 우선)	필수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신청기업 제출	필수
9	2023년 ~ 2025년(3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	신청기업 제출	필수
10	2023년 ~ 2025년(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2023년 ~ 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②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본)	신청기업 제출 (① 우선)	필수
11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견적서	신청기업 제출	필수
12	2023년 ~ 2025년(3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	신청기업 제출	선택
13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KOITA 발급본	신청기업 제출	선택
14	2023년 ~ 2025년(3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등	신청기업 제출	선택
15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신청기업 제출	선택
16	자격요건 검토 엑셀 파일 ※ POST-BI 기업 및 초광역·지역혁신선도(잠재)R&D 지정기업은 미제출	붙임 1. 자격 요건 검토	필수

※ 스캔본(pdf)는 1페이지에 1장이 나와야 하며, **상기 1~3 번, 4번 ~ 16번 각각 하나의 파일을 순서대로 통합 스캔**하여 제출(컬러 스캔 필수, 항목별 개별 스캔 불가)

※ 서식1호 ~ 3호 는 한글파일로도 별도 제출 **必**.

※ 신청서 기재 내용은 제출서류(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초광역권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정기업은 해당 지정서 필수 제출

※ POST-BI 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공공·혁신기관 입주계약서·확인서 등 입주 증빙 필수 제출